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4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김기표・이병진・황운하

노종면 • 이재관 • 김병기

윤종군 • 민형배 • 정진욱

백혜련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 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임.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 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.

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,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,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 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해당 정보 를 알아보기 어렵게 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에는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- ⑧ 제7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,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 7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.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62조(운송약관 등의	비치 등)	제62조(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)
① ~ ⑥ (생 략)	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
		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
		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
		시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
		해당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
		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하
		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
		<u>을 명할 수 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	⑧ 제7항에 따라 개선명령을
		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
		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
		이행하여야 하며, 그 명령을 이
		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
		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
		<u> 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	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
		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
		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의
		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
		<u>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	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

	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
	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
	공개하여야 한다.
<u>⑦</u> (생 략)	<u>①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